

근대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

— 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 —

신우철*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西勢東漸’ : 입헌주의 사상의 형성
- III. ‘維新變法’ : 입헌주의의 정치세력화
- IV. ‘豫備立憲’ : 입헌주의의 제도화
- V. ‘欽定憲法大綱’ : 입헌주의의 성문화
- VI. ‘脫日入美’ : 입헌에서 혁명으로
- VII. 끝맺을 수 없는 맺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청말 입헌운동의 전개과정을 ① 입헌주의 사상 형성기, ② 입헌주의 정치세력화 시기, ③ 입헌주의 제도화 시기, ④ 입헌주의 성문화 시기 등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당시 중국의 입헌운동이 주 모델로 삼았던 일본 메이지헌법과의 비교·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입헌주의의 요청은 헌법의 힘으로써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그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중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투쟁이 한족과 만주족 사이의 민족대립과 결부되어, 만주족 황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입헌군주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체제 안에서의 입헌주의 개혁은 체제 밖에서의 공화주의 혁명으로 대체되고 말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헌법) erectus@paran.com

지만, 입헌에서 혁명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합법적·제도적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평가되어야 한다.

[주제어] 清末, 立憲主義, 維新變法, 豫備立憲, 欽定憲法大綱, 明治憲法, 立憲派, 革命派

I. 들어가는 말

“중국은 아시아 최초로 공화국을 건립한 국가이며, 현재까지 무려 13개의 헌법초안·헌법을 만들어 내었지만, 홍콩·대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광대한 중국대륙 인민들은 지금까지도 의구하게 헌정의 대문 밖을 배회하고 있다.”¹⁾ 대륙에서 활동 중인 한 자유주의 운동가의 이 서술은, 현대 중국에 있어서 헌정 연구, 특히 청말 헌정사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주로 가명을 사용하는 이들의 저술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데 웹 사이트가 당국에 의해 수시로 폐쇄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소재를 확인하기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국 공화주의 혁명으로 대체·소멸된 청말 입헌주의 개혁의 실패한 역사를 되살리려는 최근 대륙의 ‘晚清熱’ 내지 ‘憲政熱’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헌법의 힘을 빌어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이로써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입헌주의’는 공통점을 지닌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은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의 발전에 성공하여 이류제국주의로 나아갔으며, 왜 동일한 모델을 본뜬 중국은 실패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그 운명의 갈림길을 판가름한 요인들 가운데, 근대국가의 제1징표라 할 입헌주의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²⁾ 하지만 근대국가 건설의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근대헌법에 대한

1) lisalee(李劍虹), 「1949年以前的中國近代憲政史回顧與反思」, 憲政論衡·關天茶舍(2002. 10. ~ 2003. 2), 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2007. 2. 20]), <導言>.

2) 청말 입헌운동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적잖이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김문, 「청말 청정부의 입헌개혁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고임정, 「청말 정치시찰단(1905)과 입헌개혁」(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채준형, 「청말 민국 초 楊度(양두)의

분석 없이, 근대국가의 성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불가능하리라 믿는다. 이하에서는 청말 입헌운동을 특히 메이지헌법 모델과의 관계에서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西勢東漸’ : 입헌주의 사상의 형성

中華의 편협한 시각으로써 세상을 재단하고 터무니없는 華夷觀으로써 스스로를 봉건 전제의 성에 유폐했던,³⁾ 동아시아 대제국 淸에 서구 입헌주의 사상이 침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중국사상 일대굴욕이라 할 아편전쟁이었다.⁴⁾ 물론, 그 이전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발간한 한적(漢籍)에서 구미 정치제도를 소개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⁵⁾ 중국인들 스스로 서양 정치제도를 인식하기 시작한

군주입헌론과 공화제 비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중국 법제사·법률사상사 일반에 대해서 장국화(여음), 임대희 외(웁김), 『중국법률사상사』(아카넷, 2003); 장진번(주편), 한기중 외(웁김), 『중국법제사』(소나무, 2006) 등의 번역서도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역사학계의 기존 연구는 입헌주의 본연의 정치적 의미와 그 헌법이론상의 위치에 대해 전문적 인식이 결여된 점에서 한계가 발견되며, 중국법제사·법률사상사 일반에 대한 번역서도 중국헌법사 또는 청말법제사로 한정된 주제·시대를 다룬 중국의 원서들과 비교할 때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국 헌법학자·법사학자·역사학자의 저작을 1차적 전거로 삼았다. 인용된 중국학자 중 국내에서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적지 않으나(張晉藩·蕭功秦·劉軍寧·鄭大華·謝俊美 등)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인용에서는 배제했다.

- 3)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세기 이전 서구에 (우연히) 도착했던 중국인은 3명에 불과했다고 하며, 일찍이 淸朝 『四庫全書』 편찬책임자 지샤오란(紀曉嵐)은 중국 이외 세계 5대주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고 한다(鍾叔河, 『走向世界』[北京: 中華書局, 1993], 35면, 42면).
- 4) 王德志, 『憲法概念在中國的起源』(濟南: 山東人民出版社, 2005), 13면. 청말의 改良派 사상이·외교관 쉐푸칭(薛福成)은 이로써 “화이가 단절된 천하에서 중의가 연결된 천하로 일변했다(華夷隔絕之天下, 一變爲中外聯屬之天下)”라고 표현했다(『籌洋芻議·變法』).
- 5) 대표적으로 영국인 선교사 메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의 『地理便童略傳(1819)』(영국 정치제도[입헌군주제]와 형식증거·배심재판 등 사법제도 소개), 독일계 선교사 귀츠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의 『大英國統志(1834)』(영국 양원제 의회 구성 및 군주와 양원의 권한 소개), 귀츠라프 등이 편찬한 선교잡지 『東西洋考每月統計傳(1833~1838)』(영국 사법제도 소개), 미국인 선교사 브리지먼(Elijah Coleman Bridgman)의 『美理哥合省國志略(1838)』(미국 정치

것은 웨이위안(魏源)의 『海國圖志(1842/1847/1852)』, 량팅난(梁廷柅)의 『海國四說(1846)』, 쑤지위(徐繼畬)의 『瀛環志略(1848)』 등이 구미(영국·미국·스위스 등)의 입헌주의 제 제도(의회제도·선거제도·임기제도·권력분립·사법제도 등)를 적극 소개·찬미한 데서부터 비롯된다.⁶⁾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된 불평등 조약들에 힘입어 서양과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서, 한편으로는 서양 선교사 외에 서양 상인과 서양인 고문 등의 활동을 통하여,⁷⁾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유학·번역서·외교·무역·영사재판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⁸⁾ 구미 입헌주의 사상을 소개·수용하는 일이 가일층 빈번해 졌다. 이러한 사조는 洋務 시기의 中體西用 주장을 거쳐, 왕타오(王韜)·정관잉(鄭觀應)·마젠중(馬建忠)·쉐푸청(薛福成)·첸츠(陳熾)·첸츄(陳虬)·허치(何啓) 등 소위 改良派에 이르러서는 정치·법제 부문의 憲政 주장으로 이어졌다.⁹⁾ 중국에서 입헌주의를 최초로 ‘거론’한 왕타오와 이를 최초로 ‘주장’한 정관잉은 모두 언론·출판활동을 통해 일찍이 西學과 접촉한 인물이었던 것이다.¹⁰⁾

제도[대통령제·3권분립·연방제도 등] 소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미 1817년에 兩廣總督 蔣攸銑의 보고 중 (여전히 전통적 華夷觀에 입각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정치제도(공화제·대통령제·자유교역 등)를 비교적 정확히 소개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상세히는 王德志, 앞의 책, 7~8면.

- 6) 王德志, 앞의 책, 9~12면 외에 張晉藩, 『中國近代社會與法制文明』(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3), 20~21면, 83~84면; 殷嘯虎, 『近代中國憲政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7), 4~6면 참조. 그러나 이들은 ‘以夷制夷’의 전통적 華夷觀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여, “오랑캐로부터 그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欲制外夷者, 先必悉夷情始’ ‘師夷之長技以制夷’ ‘不善師外夷者, 外夷制之’]”는 실용적·기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戰艦·火器·養兵練兵之法” 등 군사기술 이외에 정치제도 측면에서도 서양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다르지 못했던 것이다(王德志, 앞의 책, 9면, 13면; 張晉藩, 위의 책, 20면; 殷嘯虎, 위의 책, 7~8면, 13~14면). 이러한 발상은 평구이펀(馮桂芬)의 採西學을 통한 自强 주장을 거쳐 中體西用의 洋務 운동으로 확대된다(王德志, 앞의 책, 14면; 張晉藩, 위의 책, 102~103면).
- 7) 王德志, 위의 책, 16~17면(<萬國公報>의 3권분립 원칙 소개, <佐治芻言>의 천부인권론 소개) 및 張晉藩, 위의 책(각주 6), 73~77면(‘선교사·서양상인·서양인교문[洋幕賓·洋雇員]’) 참조.
- 8) 王德志, 위의 책, 15~16면 및 17~18면(‘서양서 번역과 과견·유학, 改良派·維新派의 西學 접촉’) 및 張晉藩, 위의 책(각주 6), 77~82면(‘여행경험·유학생·외교사절·영사법원’) 참조.
- 9) 王德志, 위의 책, 15~16면 및 17~18면(‘郭嵩燾·宋育仁·薛福成·馬建忠·王韜·鄭觀應 등’) 및 張晉藩, 위의 책(각주 6), 133~137면(‘王韜·馬建忠·薛福成·陳熾·陳虬·何啓·鄭觀應 등’) 참조.

초기 洋務派·改良派의 사상 중에는 君主專制에 반대하며 君民共主를 지지하는 주장이 흔히 발견되는데, ① 인재사용·자원이용·정치제도 등 방면에서 서양만 못한 중국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君民隔閡”의 해소와 “上下之情”의 소통을 강조한 평구이편(馮桂芬)의 『校邠廬抗議(1861)』,¹¹⁾ ② 군주와 백성이 함께 다스리는 “君民共主”만이 상하의 평형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정관잉의 『盛世危言(1894/1900)』,¹²⁾ ③ 서양 국가형태를 “君主國·民主國·君民共主國”으로 분류한 후 “君民共治”만이 “上下相通”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왕타오의 『攷園文錄外編(1882/1883/1897)·重民(下)』,¹³⁾ ④ 군민이 한 몸 되게 하고 상

- 10) 張晉藩, 『中國憲法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4), 25면 및 王德志, 앞의 책, 17~18면, 81면. 원래 중국 고전에서 ‘憲法’이란 오늘날의 의미와 달리 ① 일반적 법률 ② 법률의 공포·시행 ③ 군주의 명령의 의한 최고법률 등을 뜻하는 것이었다(張晉藩, 위의 책, 6~7면, 21면; 王德志, 앞의 책, 79~80면). 근대적 의미에서 ‘憲法’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왕타오와 정관잉이다. 왕타오는 그 『法國志略(1870)』에서 “(프랑스가 1791년에) 立一定憲法布行國中”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정관잉은 그 『盛世危言·自強論(1894/1900)』에서 “憲法乃國家之基礎…憲法不行專制嚴…憲法不行政難變”이라 하여 ‘헌법=국가근본법’ 사상을 주장한 바 있다. 왕타오나 정관잉은 모두 당시 일반적인 지방 사대부[‘鄉紳’]와 달리 ‘과거→관료’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언론·출판이나 상업 활동을 적극 추구한 새로운 유형의 유교지식인[‘紳商’]이었다. 蕭武, 『反抗革命: 晚清憲政改革再認識』, 『書屋』(2003. 2)(<http://www.housebook.com.cn> [2007. 2. 20]), 四章 및 정관잉 지음, 이화승 옮김, 『성세위안: 난세를 향한 고언』(책세상, 2003), 8면, 167~169면, 172~173면 참조.
- 11) 王德志, 앞의 책, 19~20면 및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02~103면. “以中國之倫常名教爲原本, 輔以諸國富強之術”의 모토 하에 이루어진 그의 저작은 “公黜陟·汰冗員·許自陳·易胥吏·省則例·興水利·改土貢·籌國用·收貧民·改科舉” 등 개혁조치들을 담고 있지만 “三代聖人之法”을 넓히는 데 출로를 찾은 점에서 전통적 유교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 12) 정관잉, 앞의 책, 38면 및 王德志, 위의 책, 21~22면; 張晉藩, 위의 책(각주 6), 136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26~27면. 정관잉은 이미 『易言(1875)』에서 중국 상고시대에는 군주전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상하가 “情誼相隔”하는 군주제의 폐단을 비판한 바 있었다(紀慶生, 『易言[乾]』[1884], 『論議政』, 38 및 王德志, 앞의 책, 20~21면). 청일전쟁 이후 그의 군주전제 비판은 한층 날카로워지는데, 『盛世危言·自強論』에서는 입헌정치를 실시하는 “君民共主” 국가만이 위로부터의 학정을 막고 아래로부터의 모반을 막아 부강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정관잉, 앞의 책, 151~153면 및 王德志, 위의 책, 24~25면).
- 13) 『攷園文錄外編』은 그 전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http://wave99.bbs.xilu.com> [2007. 2. 20]). 왕타오는 “상고시대에는 군과 민이 가까이하여 세상을 다스렸다”고 주장하면서 『重民[下]』, “오늘날 부국강병의 근본은 오로지 민(民)에 있을 뿐”이므로 “상하·군민 사이의 단절(隔閡)을 소통시킬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重民[上]』). 관련하여 王德志, 위의 책, 21면, 22~23면; 張晉藩, 위의 책(각주 6), 134면; 張晉藩, 위의 책(각주 10), 26면; 殷嘯虎, 앞의 책, 9면 등 참조.

하가 일심으로 통하게 하는 “君民共主” 정체가 부국강병의 근원임을 역설한 친츠의 『庸書(1892)·議院』¹⁴⁾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① “上下之情”을 소통시켜 “富國強兵”에 이르는 구체적 제도로 의회의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¹⁵⁾ 나아가 ② 상/하원·지방의회·관선의회·(제한)민선의회 등 다양한 의회조직 방안들까지 제기하게 된다.¹⁶⁾ 하지만 이들의 입헌 논의는 ① “上下之情”을 통하게 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도구적·실용주의적 관점,¹⁷⁾ ② 전통적 유교사상의 “民本主義” 시각에서 입헌주의를 이해하려는 동

-
- 14) 王德志, 위의 책, 23면; 張晉藩, 위의 책(각주 6), 135면; 張晉藩, 위의 책(각주 10), 27면; 殷嘯虎, 앞의 책, 9면 등 참조.
- 15) 王德志, 위의 책, 30~33면(“의회설립의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自強·救亡에, 대내적으로는 군민 사이의 단절 소통에 있음 … 이로써 군주전제를 君民共主 체제로 전환 … 立國之本·強國之原으로서 의회). 여기서는 왕타오·송위런(宋育仁)·귀쑤다오(郭嵩燾)·친츄·쉐푸청·정관잉 등의 의회설립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26~27면; 殷嘯虎, 앞의 책, 9~11면의 서술도 참조.
- 16) 王德志, 위의 책, 34~37면(“陳熾의 양원제 구상[상원관선, 하원민선], 陳卣·湯壽潛의 양원제 관선의회 구상, 何啓·胡禮垣의 학력제한 선거에 기한 민선의회 구상, 鄭觀應의 점진적 민선의회 구상, 조정관리 崔國因의 양원제[상원관선, 하원민선] 구상[1883]). 그밖에 張晉藩, 위의 책(각주 10), 27~28면; 殷嘯虎, 위의 책, 10면도 참조.
- 17) 王人博, 『憲政的中國之道』(濟南: 山東人民出版社, 2003/2004), 1~6면: “서양의 헌정은 서양의 문화전통에 기하여 그 안에서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다. … 헌정이란 서양 자본주의 계급혁명 의 산물이라고 통상 말하지만, 이는 서양의 심층적 문화토양에 뿌리박은 것이기도 하다. … 서양의 헌정문화는 시종일관 중국문화의 ‘道’에 속하는 사물과 유사한 것이어서 국가·민족의 생존·발전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도구로서 예정·이용된 것이 아니었다. … 근대 중국이 직면했던 주요문제는 ‘救亡圖存’ 즉 국가와 민족의 생사존망에 대한 초려(焦慮)에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중국인들이 서양 헌정을 배울 때에도 그 전체보다는 일부만 ‘깎어쓰는(截取)’ 방법을 택하여, 우선 가장 쉽고 가장 효용이 높은 곳부터 손을 썼던 것이다. … 일찍부터 우리는 ‘실용이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 王韜·鄭觀應·鍾天緯·薛福成·陳熾 등은 서양과 중국 사이의 차이점을 의회의 유무에서 찾았다. 의회는 능히 여론을 모으고 군민 사이의 단절을 소통하며, ‘君民共主’의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서양 각국의 ‘強兵富國, 縱橫四海’하는 근본원인을 의회에서 찾았던 것이다. 미국학자 柯文(Paul A. Cohen)은 王韜의 의회설립론을 孫文의 주장보다 앞선 것으로 보았다. … (그러나) 그들이 제기한 ‘君民共主’는 후일 중국인이 이해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으며, 그들이 주장한 의회설립론도 서양의 대의제 의회는 아니었다.” 張晉藩, 위의 책(각주 10), 7~11면: “첫째,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국가에 있어서 서양 헌법가치를 어떤 각도에서 수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했는데, ‘국가부강’이라는 가치의 설정은 통치자·인민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 둘째, 서양의 헌법·헌정과 그 강성함이 직접 관련이 있건 없건, 중국인들은 그러한 논리로서 이를 관찰·설명했고, 인권과 권력통제를 수위의 가치에 두고 헌정을 추구

서용합식의 과도적 경향,¹⁸⁾ ③ 왜곡된 영국 입헌군주제(=실질적 공화제) 이해에 기초한 미국·프랑스 민주주의(=명실상부한 공화제)의 폄하,¹⁹⁾ ④ 서양 입헌주의 제 제도가 이미 중국 상고시대에도 있었다는 “西學東源” 식의 견강부회(華夷觀 온존)²⁰⁾ 등 시대적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Ⅲ. ‘維新變法’: 입헌주의의 정치세력화

량치차오(梁啟超)가 그 『戊戌政變記(1899)』에서 적절히 지적하였듯 청일전쟁의 패배야말로 중국이 4천 여 년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고(“吾國四千餘年大夢之喚醒, 實自甲午戰敗割臺灣償二百兆以後始也”), 이로써 서양 입헌주의 수용론도 제도적 측면의 變法 주장으로 본격화·구체화되기 시작한다(‘영국에서 일본으로’ 헌정모델 이전).²¹⁾ 캉여우웨이(康有爲)·량치차오·옌푸(嚴復)·양두(楊度) 등 維新變法派-立憲派 사상가들은 ① 사회진화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입헌주의=입헌군주제 채택이 중국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히

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헌정을 전면 수용했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하여 지식인들은 ‘헌정-부강’의 이론모델을 창출해내었고, 그 결과 중국의 헌정 추구는 서양과 다른 것이 되었다. ... 서양 헌법이 추구한 가치와 목표는 제도설계를 통해 정부권력 남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실현하고, 이로써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헌법이념은 이와 달라서, 중국에서 헌법의 창도자·실천자들은 중국의 국정(國情)과 실제에서 출발하여, 수위에 둔 가치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진흥이었고, 서양 헌법이 추구한 민주·인권의 가치는 2등으로 끌어내려졌다.”

18) 王德志, 앞의 책, 52~55면, 58~61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29면.

19) 王德志, 위의 책, 21면, 22면, 39면.

20) 王德志, 위의 책, 55~58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29~30면.

21) 王德志, 위의 책, 23~24면, 39면, 45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31~32면; 王人博, 앞의 책, 6면; 蕭武, 앞의 글, 一장; 殷嘯虎, 앞의 책, 12~15면 등 참조. 또한, 「立憲紀聞·中國立憲之起原」, 『東方雜誌·臨時增刊: 憲政初綱』(1906. 12[음]), 1면: “吾國之變法, 蓋數十年於茲矣. 自甲午中日一戰, 而吾國以東海大邦, 見敗於扶桑三島. 知微之士, 乃冥心孤往, 探索其由. 始有見於強國之道, 不在堅甲利兵, 而實以修政立教爲本原.” 한편, 량치차오의 이 유명한 문장은 오세창이 제자를 쓰고 민영환이 서문을 붙인 현재의 『淸國戊戌政變記』(學部編輯局, 1900) 「卷八·改革起原」 서두에서, “支那四千年の大夢을喚起하기는實로甲午戰爭으로부터始하였도다”라고 번역되었다.

고(“開制度局而定憲法”), ② 동시에 천부인권론에 입각한 민권(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강조하면서(“興民權”), ③ 입헌주의·권력분립 주장을 한층 구체화시켜 의회제도의 정비와 사법제도의 개혁을 현실정치에서 제기했던 것이다(“設議院開國會·實行權力分立”).

‘다윈의 불독’ 헉슬리(Thomas H. Huxley)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를 『天演論(1898)』으로 번역했던 진화론자 옌푸는, 그 자신 영국 해군학교 유학시의 동창들이 청일전쟁의 결과 전원 수몰되는 충격을 바탕으로, 강렬한 亡國 위기의식에서 民度論을 전개하고 유교사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²²⁾ 그는 패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그 원인을 “중국의 民度, 즉 民力·民智·民德의 부족”에서 찾았고, 중국의 民度が 쇠한 원인이 유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국이 富強으로 나아가는 進化의 도상에서 최대의 적은 서양열강의 침략이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설파했던 것이다.²³⁾ Kang여우웨이도 『春秋公羊傳』의 三世說을 응용하여 “據亂世→升平世→太平世”의 단계를 “絶對王政→君主立憲→共和制”의 정치체도와 각각 연결시키면서, 현재 중국의 수준에서는 입헌군주제만이 채용 가능한 유일한 정치체제임을 역설하였다.²⁴⁾ 량치차오 또한 일찍이 <論君政民政相嬗之理(1896)>에서 “多君爲政之世”를 “酋長之世”와 “封建及世卿之世”로, “一君爲政之世”를 “君主之世”와 “君民共主之世”로, “民爲政之世”를 “總統之世”와 “無總統之世”로 각각 분류한 三世六別의 정치체제 진화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²⁵⁾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은 이후 <國家思想變遷異同論(1901)> <中國專制政治進化史論(1902)>까지 이어진다.²⁶⁾ 당시, 정치체제 진화론은 공조진(龔自珍)의 말세관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으로, Kang여우웨이·량치차오·옌푸 등 維新變法派-立憲派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정세

22) 李曉東, 『近代中國의立憲構想: 嚴復·楊度·梁啓超と明治啓蒙思想』(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05), 31~33면.

23) 李曉東, 앞의 책, 33~37면, 42~43면.

24) 王德志, 앞의 책, 28~29면.

25) 梁啓超, 『梁啓超全集』(北京: 北京出版社, 1999), 96면(「第一卷 變法通議」).

26) 梁啓超全集, 455면 이하(「第二卷 瓜分危言」), 771면 이하(「第三卷 新民說」).

인식이었다.²⁷⁾

당시 입헌주의를 제창한 사상가 가운데 서구의 원형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옌푸는, 서양의 우위를 學術과 刑政에서 찾으면서 자유와 평등의 天賦人權을 “天演”에 부합하는 공리로 각별히 강조했고(<論世變之亟><法意·按語>), 서양 각국의 강성 원인도 바로 “以自由爲體, 以民主爲用”한 데 있다고 보았다(<原強>).²⁸⁾ 량치차오 역시 천부인권론의 영향 하에 “天子人之權”으로서 민권을 적극 제창했다(<自由書·草茅危言[民權篇]·國權與民權><新民說·論權利思想·論自由·論進步>).²⁹⁾ 옌푸는 권력분립을 주장하면서도 량치차오에 비해서는 입법권, 즉 의회설립보다 사법권의 독립, 즉 잔혹한 형사사법의 개혁 쪽으로 기울어졌다(<法意·按語>).³⁰⁾ 반면, 량치차오는 사법권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입법권 쪽으로 현저히 기울었고, 국회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論立法權>).³¹⁾

- 27)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40~45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64~170면; 殷嘯虎, 앞의 책, 2~3면. 그밖에 이들의 입헌(입헌군주제) 주장에 대해서는 kang우웨이의 <上清帝第五書><上清帝第六書><請告天祖誓群臣以變法定國是摺><敬謝天恩並統籌全局摺><請定立憲開國會摺><請君民合治滿漢不分摺><謝賞編書銀兩乞預定開國會期並先選才議政許民上書言事摺><請講明國是正定方針摺>, 량치차오의 <立憲法議><代五大臣考察憲政報告><立憲政體與政治道德><硃諭與立憲政體><立憲國詔旨之種類及其在國法上之地位> 등(中國史學會[主編], 『戊戌變法[第2冊]』[上海: 神州國光社, 1954], 188면 이하[194면], 197면 이하[199면], 206면 이하[208면], 214면 이하[216면], 236~237면, 237면 이하[237면, 239면], 240면 이하[241면]; 梁啓超全集, 405~408면, 2066~2068면, 2298~2299면, 2409~2412면) 및 王德志, 앞의 책, 23~24면, 25~27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83~185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36면, 48~54면; 殷嘯虎, 앞의 책, 16~17면 등 참조.
- 28) 王德志, 앞의 책, 42~43면 및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92~193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37~38면, 39면; 殷嘯虎, 앞의 책, 24면.
- 29) 梁啓超全集, 342면, 671면 이하, 675면 이하, 683면 이하(684면) 및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91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36면. 이외에 당시의 민권론에 대해 상세한 것은 王德志, 앞의 책, 45~51면 및 殷嘯虎, 앞의 책, 24면 이하, 28면 이하;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91~193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8~9면, 36~38면, 39면 등 참조.
- 30) 李曉東, 앞의 책, 72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90~191면, 194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38면, 55~56면.
- 31) 范中信(編), 『梁啓超法學文集』(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10면 이하 및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86~187면, 189~190면, 191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35면, 36면, 55면. 그밖에 당시의 의회설립론·권력분립론(사법독립론)에 대해서는 王德志, 앞의 책, 37~45면, 86면,

하지만 군주제 존속을 전제로 한 당시의 立憲이란, 권력의 정당화 내지 권력의 통제 메커니즘이라기보다, 국가와 민족의 부강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했다(立憲救國·立憲強國).³²⁾ 그 민권/민권론 역시 ① 민본사상의 한 연장으로, ② 民度에 따라 제한을 받는 강국에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③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단체적 자유로서 제기된 것이었다.³³⁾ 나아가 그 의회/의회론도

- 124~127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79~183면, 185~191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45~48면, 54~56면; 殷嘯虎, 앞의 책, 16면, 17~18면 및 신우철, 「청말 사법개혁 연구: '사법독립' 원리 수용의 비교헌법사」, 『중국학보』 54(2006), 403~404면 등 참조.
- 32) 王德志, 앞의 책, 44면(「祖宗之成憲」을 따르느냐 <西洋富強之政>을 따르느냐의 차이 뿐 부강에 이른다든 목표는 보수파나 개량파나 동일), 81~83면(헌법사상과 민본사상, 헌정과 인정[仁政]의 혼동 ... 입헌구국·입헌강국이 전 사회에 점차 수용), 83~85면(梁啓超의 헌정과 인정 구분 및 인정 비판), 91면(「강국의 수단으로서 입헌」) 및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8~10면(「민권 개념을 제기함으로써 의회와 부강이라는 목표를 서로 연결, 입헌은 국가부강의 도구인 동시에 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 영국의 입헌군주제 모델이나 미국의 민주공화제 모델이나의 차이 뿐, 헌정 실행을 통해 국가부강을 실현한다는 근본목표에서는 입헌파나 혁명파나 일치). 당시 입헌파들은 제한권의 귀속에 관하여 「國民立憲」보다 다소 완화된 「國民協贊立憲」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淸朝廷에 의해 거부되었다(王德志, 앞의 책, 116~121면).
- 33) 王德志, 앞의 책, 45~47면(「군권·관권에 대한 대칭으로서 민권, 국가·정부 존재기초로서의 민권, 민권과 군권의 병행·보완」), 47~49면(「민권과 군권의 균형 및 <屈尊以保尊>[易疏], 민권체용이 군권에 유리하고 군민의 친화력을 증강시키며 <外辱>에 저항하는 데에도 유리[汪康年]」), 49~51면(「민권 행사에는 <民智>가 요구됨[梁啓超], 의회설립으로 개인 <自主之權> 보호[何啓·胡禮垣]」), 89면·110~114면(「군권·관권 견제를 위한 사회적 참정권으로서 민권」) 및 張晉藩, 앞의 책(각주 6), 192~193면(「민권의 초점은 민중의 참정권·결사권 쟁취 ... 여기서 국민은 중류사회로 구성 ... 자유가 보장되면 의무에도 분투하여 결국 국가의 부강으로 이끌 것...嚴復이 제창한 민권은 실제로는 <紳權>」); 殷嘯虎, 앞의 책, 24~25면(「民度에 따라 제한되는 민권[嚴復], 민권의 핵심은 국정참여권」), 31면(「법률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자유[梁啓超]」); 李曉東, 앞의 책, 48~49면·50~55면(「국가의 강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를 우선시하여, 자유는 가치상대적인 양의 문제로 격하 ... 자유에 대신하여 자치를 높이 평가, 부강을 위한 전통적 자치제도 확립을 추구 ... 자유의 범람에 대한 의구심과 국가의 생존에 강한 관심...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사회의 자유를 중시[嚴復]」), 73면(「민권은 서양에서 처럼 개인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인 부강을 위한 민권[嚴復]」), 82면(「중국어는 철학상 자유만 있을 뿐 정치상 자유는 없다[楊度]」), 83면·85~86면(「強國이라는 과제의 전제로서 자유·책임 있는 인민, 즉 富民[楊度]」), 87면·89~90면(「중류사회 인민의 참정권·책임감 신뢰, 이로써 책임정부·부만강국을 실현[楊度]」), 105면(「군권·관권 외에 민권의 중요성 인식[梁啓超]」), 117면(「전통적 민본사상의 제도화, 국가로부터의 개인적 자유보다는 국정참여의 자유로서 민권, 군권·관권에 대항하여 이를 제한하는 행위자로서의 민권[梁啓超]」). 그밖에 梁啓超, <新民說·論權利思想>, 梁啓超全集, 671면(「權利何自生? 曰生於強」) 및 같은 이, <新民說·論自由>, 梁啓超全集, 678면(「自由云者, 團體之自由, 非個人之自

① 전통적 민본사상의 잔영이 여전히 남아 있는, ② 民度の 향상을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③ 강력한 책임정부의 수립을 위한 감독기관으로서, 2차적·도구적인 의미만을 지닐 뿐이었다.³⁴⁾ 이들에게 있어서 ‘권력분립·권

由也’) 등도 참조

- 34) 王德志, 앞의 책, 37~39면(‘중국 쇠약의 원인인 <體制尊隔>의 폐단을 해결하여 <通下情>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설립 주장[康有爲]’), 40~42면(‘의회설립 급진론[鄭觀應·趙而霖]과 집진론[梁啓超·康有爲]…康有爲의 <致強> 수단으로서 의회설립론’), 43~44면(‘嚴復의 <富強速成論><議會強國論> 반대…<利民政治>로써 국가부강 달성, <民度> 제고를 통한 인민 자치능력 향상으로써 <利民政治> 추진 가능’), 57~58면(‘康有爲·梁啓超의 <西學東源>식 의회제 설명’), 86면(‘의회가 있어야만 헌법이라 지칭 가능[梁啓超]’);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35면(‘<強國之道>로서의 의회[梁啓超]’), 39면(‘사상문화 건설만을 증시하여 제도 개혁의 의의를 소홀히 함[嚴復]’), 45~48면(‘康有爲의 <通下情><致強> 수단으로서 의회설립론’), 48면(‘梁啓超의 입헌 필수조건으로서 국회개설론’); 殷嘯虎, 앞의 책, 16면(‘康有爲의 부국강병 수단으로서 의회론’); 李曉東, 앞의 책, 38~42면(‘<民度>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國會開設>[嚴復]’), 49~50면(‘강력한 책임정부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 국회[嚴復]’), 55~60면(‘전통적 민본사상의 제도화로서의 국회[嚴復]’), 77~80면(‘강한 중국의 건설을 위해, <金鐵主義>에 입각한 <君主立憲國會速開論>을 주장[楊度]’), 81~86면(‘<富民強國>을 위한 <金鐵主義=세계적 국가주의=경제적 군국주의>를 제창, 전통적 민본사상에서 인민의 책임감·주체성을 도출[楊度]’), 86~90면(‘3권분립을 취하되 국회의 역할에 주목, 책임정부를 위한 국회개설을 선포히 주장, 국회의 입법권보다 [정부] 감독권을 증시, 嚴復·梁啓超와 달리 [중류사회] 인민의 <民度>를 낙관, 국회개설로써 인민을 단련[<民度>의 향상이 가능], 嚴復과 달리 지방자치의 위협성[국가분열] 인식, 입헌 레벨의 고저에 따른 ① 국회개설 후 입헌[民定憲法][영국형], ② 국회개설·입헌 동시진행[君民共定憲法][프로이센형], ③ 입헌 후 국회개설[欽定憲法][일본형] 등 3유형 분류[楊度]’), 92면(‘민본사상 관점에서 유혈혁명 반대[楊度]’), 92~94면(‘梁啓超를 <開明專制論>에서 <國會速開論>으로 설득[楊度]’), 94~97면(‘<豫備立憲> 시기 정부 관료로 활동[楊度]’), 100~101면(‘<賢人政治> 주장보다 다수 인민의 [<民度>] 양성을 증시[梁啓超]’), 102~118면(‘<民度> 부족을 이유로 한 <國會開設漸進論> 내지 국가주의·반혁명주의에 입각한 <開明專制論>에서 책임정부·의회감독기능에 근거한 <國會速開論>으로 전환, 국회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입법권 중심의 <指揮主動機關>에서 대 정부 감독권 중심의 <監督補助機關>으로], 서양 국회를 차용하여 전통 민본사상을 제도화[梁啓超]’) 등 참조(梁啓超의 <開明專制論[1905]>은 梁啓超全集, 1451면 이하 소재. 그밖에 입헌과의 공화제/입헌군주제·의회설립 “조건불비론” 및 이에 대한 혁명파의 반론은 王德志, 앞의 책, 166~181면(‘梁啓超의 <開明專制論>’) 및 181~185면(‘<民度論>에 대한 혁명파의 비판’), 201~205면(‘입헌과 楊度·嚴復의 <國會速開論>’); 殷嘯虎, 앞의 책, 38~45면(‘<開明專制論>의 제기, 군주의 <恩賜>로서의 의회에 대한 환상, 급진적 혁명론 반대’), 45~51면(‘혁명파의 반론’), 51~61면(‘특히 57~59면(‘입헌과의 혁명파의 논쟁[특히 <民度>와 의회정치 문제]’) 등 참조. 당시 조정의 입헌보수파(집진론자) 사이에 성행한 계몽전제주의는 일본 메이지 초기의 그쯔(카토오 히로유키의 <眞政大意[1870]>에 나타난 계몽전제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한다. 상세히는 蕭功秦, 「清末新政中的保守主義思潮」,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五장.

력통제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성문헌법의 제정'이라는 근대 입헌주의의 본질이란 '부국강병으로써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달성'한다는 목전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얼마든지 재단될 수 있는 편의적 도구에 불과했다.

IV. '豫備立憲' : 입헌주의의 제도화

일본 메이지유신을 본뜬 維新變法派의 “百日天下의 立憲夢”³⁵⁾은 ① 권력적 배경의 부재, ② 지나친 외세 의존, ③ 조건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³⁶⁾ 이후 이들은 革命派와 대립·경쟁하면서 立憲派라는 정치세력을 형성하였고, 신해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정치지형에서 淸朝廷을 꼭짓점으로 한 삼각구도의 한 중심축이 되었다. 특히,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군대의 경쟁이 아니라 정치의 경쟁, 즉 입헌과 전제 두 정체의 싸움에서 전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를 예견했던 입헌파의 주장이 사회의 대세를 형성했고, 立憲이란 두 글자는 이제 일부 선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전체 사대부 층의 口頭禪이 되었다.³⁷⁾ 외우·내환에 시달리던 淸朝廷도 결

35) 殷嘯虎, 앞의 책, 11면.

36)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50면·57면·60~70면(중국과 일본의 제반 차이와 일본 메이지유신 성공에 대한 진지한 분석 내지 과학적 해석 없이 이를 무분별하게 모방... 입헌과 전제, 유신과 수구, <變法>과 <朝宗之法>의 격렬한 충돌... <以君權變法>의 입헌군주제 개혁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保中國不保大清>이라는 만주족 수구대신의 분열 우려·의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서태후로부터 실권 회수를 노렸던 광서제에게 이용당함... 민족자본주의의 발전이나 민중 민주주의의 각성이라는 전제조건이 결여... 제국주의 외세를 순진하게 신뢰·의존) 및 殷嘯虎, 앞의 책, 18~23면. 그밖에 Lisalee, 앞의 글, 一장(一): “維新派 인사들은 영국 선교사 Timothy Richard를 광서제의 고문을 추천했고, 일본 전 총리대신 이토오 히로부미를 ‘客卿’으로 초빙할 준비까지 했다.”

37) 王德志, 앞의 책, 94면 및 金亮賢·吳起偉, 「晚淸豫備立憲述評」, 『麗水師範專科學校學報』 26-4(2004), 法律圖書館(<http://www.lawbook.com.cn> [2007. 2. 20]), 一장; 張從容, 「回到歷史的起點: 析<欽定憲法大綱>的出台原因」(미간행논문), 一장; 天林, 「清末豫備立憲在中國歷史上的地位」, 公法評論(<http://www.gongfa.com/qingmoyubeilixian.htm> [2002. 8. 7/2007. 2. 20]), 一장(一); 笑蠟(가명), 「憲政的起點: <欽定憲法大綱>」, 憲政論衡(인터넷 원문 게재), 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2007. 2. 20]), 一장(3.A); 劉軍寧, 「清末商民的憲政情懷」, 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2007. 2. 20]), 二장;

국에는 維新變法派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른바 ‘新政(1901~1905)’을 거친 다음, ‘出洋考察政治(1905~1906)’를 통해 ‘豫備立憲(1905~1911)’의 실시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³⁸⁾ 러일전쟁이라는 직접적 동기의 배후에 깔린 입헌주의 개혁의 ① 정치적 동기는 ㉞ 혁명을 회피하여 왕조를 보전하고 ㉝ 부국강병을 실현하여 외침의 굴욕을 없앤다는 데 있었으며(“皇位永固, 外患漸輕, 內亂可弭”³⁹⁾), ② 그 정치적 추진 역량은 ㉞ 광서제·서태후·순친왕(監國攝政王·載灃) 등 중앙 최고결정권자, ㉝ 이광(奕劻)·편팡(端方)·자이저(載灃) 등 新洋務派 조정중신, ㉜ 위엔스카이(袁世凱)·장즈둥(張之洞)으로 대표되는 지방 漢人督撫 세력 등이었으며,⁴⁰⁾ ③ 그 계급적 기초는 ㉞ 紳商 등 지방의 신흥

蔣華志, 「清末新政新論」, 『樂山師專學報 社科版』(1990. 2),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및 lisalee, 앞의 글, 一장(一) 등 참조 러일전쟁과 입헌운동의 관계 일반에 대해서는 程爲坤, 「日俄戰爭與清末立憲運動」, 中國人民大學清史研究所, 『清史研究集(第七輯)』(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90) 수록,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참조.

- 38) 편팡(端方)·자이저(載灃) 등 出洋考察政治를 주도한 조정중신의 개혁상소는 지명수배 상태였던 ‘欽犯’ 랑치차오와 ‘曠代逸才’ 양두에 의해 대필된 것이었는데, 이들 조정대신들은 당시 정부 내에서 보수파와 대립하면서 일정 수준의 체제유지적 개혁성을 대변하고 있었다(新洋務派). 이들은 랑치차오가 일찍이 <立憲法議(1900)>에서 제시한 개혁 청사진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양두는 서태후에게 직접 헌정과 헌법을 강의하기까지 했다. 상세히는 陳小平, 「近現代中國憲政運動發軔的國內環境」, 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2007. 2. 20]), 一장(一), 二장(二)의 2(1); 張從容, 앞의 글, 二장 및 梁啓超全集, 407~408면 참조. 관련하여 維新變法과 清末新政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각도로 분석한 張連起, 「‘戊戌變法’與‘清末新政’異同辨析」, 『北方論叢』(1986. 2),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의 서술 참조. 그밖에 청말의 新政·出洋考察政治·豫備立憲 등 개혁에 관한 당시의 주청(奏)·상유(諭) 등은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下)』(北京: 中華書局, 1979) 소재 자료들을 참조할 것. 아울러 그에 대한 일반적·개괄적 서술로서 신우철, 앞의 글(각주 31), 404면 이하 및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중국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형성」, 『법사학연구』 34(2006), 264면 이하도 참조.
- 39) <出使各國考察政治大臣載灃奏請宣布立憲密摺(1906)>,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174~175면. 당시 조정중신의 입헌동기·입헌이해에 대해서는 遲云飛, 「清季主立憲的官員對憲政的體認」, 『清史研究』(2000. 1),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특히 등 一장) 및 鄭大華, 「關於清末預備立憲幾個問題的商榷」, 『史學月刊』(1988. 1),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특히 등 二장); 張連起, 「論清末國策轉勢的背景和目的」, 『北方論叢』(1994. 2),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특히 등 二장) 참조. 그밖에 張從容, 앞의 글, 一장(‘急功近利·自保心理·矛盾心理·求安心理... 혁명과 입헌 중 피해가 작은 쪽을 선택, 입헌으로써 <自救>를 실현하려는 환상... 전체 개혁을 정부가 절대적으로 지휘·통제, 개혁 방안의 보수 기조를 확정’) 및 殷懋虎, 앞의 책, 63~64면, 69~71면도 참조.

기업인들과 ㉔ 일본유학생 중심의 정치참여와 지식인들이었다.⁴¹⁾

- 40) 陳小平, 앞의 글, 一장(一)「西法에 밝고 維新을 원하는 것으로 여겨진 광서제 ... 君權·服制·辨髮·典禮란 손대지 않는 한에서 입헌을 허용하고 일본 헌법을 칭송했던 서태후 ... 평생 서양서적 읽기를 즐겨했던 순친왕 ... 鐵良·榮慶·孫家鼐만이 입헌에 반대 ... 李盛鐸을 위시한 <駐外大臣>들도 헌정개혁을 적극 지지», 一장(二)「<湖南新政>의 결과 후난은 일종의 정치특구가 됨 ... 남은 張之洞, 복은 袁世凱 ... 張謇의 적극적 설득으로 이들은 입헌을 지지»; 蕭武, 앞의 글, 三장「지방 督撫를 발탁하여 이들에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결단력과 정치경험을 가진 서태후 ... 戊戌變法 시기 개명황제의 이미지를 세웠던 광서제의 입헌파에 대한 심리적 영향력 ... 태평시기의 王爵召 載灃과 유유부단한 隆裕太后»; 張從容, 앞의 글, 二장「新洋務派와 보수파의 투쟁이 가장 격렬 ... 입헌 여부의 문제, 입헌 예비기간의 확정 문제, 판재개혁 중 책임내각제 도입 문제 등 권력 재분배를 둘러싸고 중앙정치 내부에서 권력투쟁 발생」 등. 당시 권력층 내부의 입헌주의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주요 정치세력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運云飛, 「預備立憲與清末政潮」, 『北方論叢』(1985. 5),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鄭大華, 앞의 글, 一장「통치집단 내부의 입헌파」, 三장「일본식 입헌주의 [통치집단 내부 입헌파]와 영국식 입헌주의 [부르주아 입헌파] 사이의 논쟁»; 鄭大發, 「論清末統治集團內部的立憲派」, 『江漢論壇』(1987. 9),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一장「통치집단 내부의 입헌파」; 王德志, 앞의 책, 94~95면(張謇의 활동), 101면 이하(조정대신의 입헌개혁 상소와 입헌반대론), 147면 이하(豫備立憲 상소와 상유);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71면 이하, 76면 이하, 87면 이하, 98면 이하; 天林, 앞의 글, 一장(一~三), 二장(一), 笑蝶, 앞의 글, 一장(1~4); 殷蘭虎, 앞의 책, 65면 이하 등; 蕭功秦, 앞의 글(각주 34), 一장「입헌보수주의·개명전제론·입헌집진론」, 二장「외부위기와 입헌부적합론」, 三장「외래제도의 중국적응과 입헌집진론」, 四장「입헌의 <遠因><原動力> 배양론」; 蕭功秦, 「清末新政時期的立憲論爭及其現代啓示」,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등 참조.
- 41) 陳小平, 앞의 글, 二장(一)「시민사회의 형성 ... 洋務運動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자본가계급의 발전 ... 商人·商法·商會·商團 등의 형성·발전 ... 민족자본가 계급의 정치행정 직능 간여 개시 ... <義利兼顧>의 사대부 상인 <紳商>의 적극적 활동 ... 근대적 지식인계층의 출현 ... [東京法政大學 法政速成科 등 일본]유학과 국내 신식교육 증대」, 三장(二)「결사자유 ... 維新 시기의 學會·商會/商團, 豫備立憲 시기의 豫備立憲公會 [관료+상인]·政聞社·憲政講習會/憲政公會, 정당정치 단계의 결사로 발전」; 劉軍寧, 앞의 글, 一장「豫備立憲公會와 국회개설 청원에 상인계층의 적극 참가 ... 상인계층은 입헌운동의 주체이자 중견」, 二장「청말 전제정체는 상공업자들의 최대 장애 ... 商人·商會의 국회청원운동·헌정연구회 활동 ... 張謇·湯壽潛 등 <紳商>의 적극적 입헌[조정 설득] 활동[일본헌법 자료 제공] ... 상인·학자 중심 입헌파 인사의 資政院·咨議局 활동[국회개설 청원, 정부비판 등]」, 三장「혁명[정권교체]으로 입헌·헌정[정권제한]을 대체할 수는 없음 ... 張謇 등 상인입헌파의 정부권력 제한 요구」, 四장「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 청말 입헌운동의 특징은 지식인과 상인[紳商]의 결합에 있음 ... 咨議局 활동에 대한 당시 외국인들의 적극 평가 ... 헌정의 실패 원인은 청 정부에 있음»; 蕭武, 앞의 글, 四장「士紳-官僚-皇權의 고대적 안정시스템이 <紳商>의 등장으로 파괴, 이로써 <公共空間>이 형성됨 ... 신홍 <紳商>의 권리의식과 정치적 자각 ... 과거제폐지[1905]로 지식인계층과 현존 정치체제와의 관계가 단절됨 ... 일본 등 유학생 증대 ... 이 집단에 헌정운동은 하나의 돌파구가 됨」 및 金亮賢·吳起偉, 앞의 글, 二장(一-2)(二) 참조. 한편, 運云飛, 「重新審視晚清立憲派」,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V. ‘欽定憲法大綱’ : 입헌주의의 성문화

중국 최초의 헌법문서 <欽定憲法大綱(1908)>을 낳게 되는 청말 新政·豫備立憲 시기 淸朝廷의 입헌주의 제 개혁에 대해서는, 한판의 ‘정치사기국(政治騙局)’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는 가운데,⁴²⁾ 최근 그 원시입헌주의(<欽定憲法大綱>) 내지 원시의회주의(<資政院><咨議局>)의 역사적 의의 및 그것이 이후에 미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견해들이 늘어나고 있다.⁴³⁾ ‘豫備立憲’ 뿐 아니라 ‘憲政實施’까지 포함한 ‘仿行憲政’

a.net [2007. 2. 20])에서는 당시 입헌파를 부르주아계급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新紳士’라 명명하고 있다(‘이들 대부분[80%]이 과거 출신이었으며, 진정한 기업가 신분을 가진 이는 張謇·許鼎霖 등 극소수였음’). 관련하여 張連起, 앞의 글(각주 39), ‘청말 국책변경의 경제적·정치적·국제적 배경’도 참조.

- 42) “실폐한 정권이 이끈 실폐한 입헌운동(張從容, 앞의 글, 서두 각주 3). “일언이폐지 하여(假立憲)…”(鄭大華, 앞의 글, 서두). 그밖에 신우철, 앞의 글(각주 38), 264~265면 각주 13의 서술도 참조. 청말 입헌운동의 실패원인에 대해서는 謝俊美, 『淸末新政失敗論議』, 『歷史教學』(1995. 11),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개혁의 강력한 지도력 결핍, 지방 督撫의 무관심·형식주의, 중·소 관리들의 인식부족·반대, 심각한 재정곤란, 일본 입헌방식의 맹목적 모방 및 이로 인한 입헌파의 이반, 제국주의 열강의 냉담한 태도) 및 金亮賢·吳起偉, 앞의 글, 二장(一)「督撫離心과 입헌파의 이반, 농촌소요」 참조.
- 43) 대표적으로 張從容, 앞의 글, 서두(‘정치사기국이라는 혁명파의 평가는 승자는 왕이요 패자는 오랑캐라는 식의 무단적 평가’), 三장(‘입헌 초기의 개혁 열망은 강력, 이후 점차 완만해짐…대체로 헌정의 시간표에 따라 진지하게 진행됨…당시로서 더 나은 대안의 제시가 없는, 사후적·승자중심의 비판…중국 헌정사 최초의 법적 형식의 황권제한으로서 이후 헌정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金亮賢·吳起偉, 앞의 글, 二장(‘보수·사기로서의 일면 외에, 청초의 멸망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정치제도의 탄생을 재촉하였으며, 2천 여 년 군주전제에 충격을 가하여 정치 근대화의 길을 열었으며, 헌정지식의 확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정치 계몽교육의 계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의의를 지님’); 蔣華志, 앞의 글(‘청말 新政은 중화민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欽定憲法大綱은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여 제정된, 입헌군주제의 정신을 체현한 헌법요강으로, 근대 중국이 서양을 학습하여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 등 참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중국학계의 ‘晚淸熱’과 ‘憲政熱’과도 상관이 있다(劉軍寧, 앞의 글, 서두). 또한, 蕭瀚, 『百年憲政的歷史省思』, 中國新聞網(<http://www.chinanews.com.cn/2001-09-05/26/119523.html> [2001. 9. 5/2007. 2. 20]), “要待野蘭時, 立憲已成灰—評淸末預備立憲” 부분: “입헌파의 ‘황권제한’ 은 폐책략에 넘어간 청 정부가 못보르고 ‘입헌의 험지’로 들어갔으나, 헌정시스템의 운영으로 자신의 권력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권력제한이라는 입헌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혁명의 제물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기로 변한 셈.” “겉으로는 일본을 본뜬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양을 본받아, 겉으로 군주입헌의 이름을 내걸고 뒤로는 민주입헌 실질을 행하려는 것(‘政台之因果關係論’, 『東方雜誌』 第7年 第12期 天林, 앞의 글, 三장[一]에서 재인용)”이라는 당

의 대 개혁⁴⁴⁾은 곧 “大權統於朝廷, 庶政公諸輿論”⁴⁵⁾의 모토 하에 일본 메이지 헌법(1889)의 입헌방식을 모방·시행(“仿行”)하려는 것이었다.⁴⁶⁾ 즉, <欽定憲法大綱>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입헌개혁은 ① 개혁의 절차(입헌약정→여론수렴→관제개혁→헌법공포)와 기간(9년), ② 개혁의 원칙(2원제 입헌군주제[군주주권+입헌주의]), ③ 개혁의 내용(㉑ ‘大權主義’ 책임내각[군주의 각료임면권과 군사 직접통제권], ㉒ ‘軍咨府’ 설치[일본 參謀本部에 상당], ㉓ ‘弼德院’ 설치[일본 樞密院에 상당]) 등 여러 측면에서 메이지헌법의 그것을 모방한 것으로 평가된다(아래 <도표> 참조).⁴⁷⁾ 이 헌법문서의 역사적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혁명파의 관점에 입각한 ‘군주전제의 강화를 위한 봉건적 법전’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넘어서, ‘자본주의적 색채의 2원제 입헌군주제 헌법(강령)’으로서 그 진보적 의의를 인정하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① 황권의 제한, 공민 기본권의 확인, 3권분립의 정권조직 등 <欽定憲法大綱>이 지닌 내용적 진보성을 지적하면서, ② 그것이 메이지헌

시 보수파의 걱정이 완전히 기우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밖에 청조 멸망과 豫備立憲의 무관성을 지적하는 宋四輩, 『清末豫備立憲 芻議』, 『鄭州大學學報』(2005. 5), 四장(三)도 참조

- 44) ‘豫備立憲’과 ‘仿行憲政’의 관계 여하에 대해서는 宋四輩, 앞의 글, 四장(一) 참조
 45) <宣示豫備立憲先行釐定官制論(1906. 7. 13[음])>,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44면.
 46) 당시의 조정대신의 상소문들에는 일본 입헌개혁의 모방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出使各國考察政治大臣載澤奏請宣布立憲密摺(1906)>,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173~174면. 이 상소문을 올린 자이자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이토오 히로부미는 메이지헌법을 본떠 군주주권에 입각한 입헌 실시를 권유한 바 있는데, 이들은 호즈미 아즈카로부터 일본헌법 강의를 듣기도 했다(載澤, 『考察政治日記』1908],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77~78면[재인용]).
 47) 天林, 앞의 글, 三장(一). 그밖에 당시의 일본 메이지헌법 모방에 대해서는 羅華慶,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近代史研究』(1999. 5), 憲政知識網·中國立憲檔案館/研究反思(<http://www.xianzheng.com> [2007. 2. 20]); 羅華慶,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北方論叢』(1991. 3),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羅華慶, 『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 『河北學刊』(1992. 6),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王德志, 앞의 책, 39면, 147면, 150면, 226면, 229면;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99면, 101~103면, 117면; 殷嘯虎, 앞의 책, 70~71면, 91~94면; 笑蝶, 앞의 글, 一장(2), 一장(4); 鄭大華, 앞의 글, 三장; 蕭武, 앞의 글, 四장 및 신우철, 앞의 글[각주 31], 409면 각주 44의 인용부분과 신우철, 앞의 글[각주 38], 265~266면, 특히 266면 각주 16의 인용부분 참조

법의 2원제 입헌군주제를 모방하기에 이른 원인들을 분석하고, ③ 헌법제정을 둘러싸고 영국 모델을 주장한 부르주아입헌파와 일본 모델을 주장한 청 정부의 논쟁(제한절차 문제, 책임내각의 책임대상 문제, 의회의 권한 문제 등) 및 ④ 그 제정에 반대한 수구세력(반한[排漢]사상에 투철한 만주거족, 통치집단 내부 입헌파[신파인물]과 대립한 한족대신, ‘祖宗成憲’을 완고히 고수하려는 관리 등)의 헌법에 대한 공격 등을 근거로 들어, ⑤ <欽定憲法大綱>은 단순히 ‘군주전제의 강화를 위한 봉건적 법전’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색채의 2원제 입헌군주제 헌법(강령)’임을 논증하는 견해를 들 수 있다.⁴⁸⁾

48) 위의 내용은 鄭大發, 「重評〈欽定憲法大綱〉」,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1987. 6),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을 요약한 것임. 또한 天林, 앞의 글, 三장(一)〈憲法大綱〉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군주전제에 대한 부정...기본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의 법률원칙에 따라 전통적·봉건적 구법을 개혁한 것으로서 모종의 진보적 경향을 구현...인민주권의 원칙을 제외한 권력분립원칙·기본권중립원칙·법치주의원칙 등을 일정 수준 구현); 宋四輩, 앞의 글, 三장(六)·四장(의회주의·사법독립 등 3권분립의 입헌정치원칙을 확립한, 농후한 봉건주의 색채를 지닌 동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색채도 어느 정도 지닌, 이미 기본적으로는 부르주아계급의 헌법문서); 金亮賢·吳起偉, 앞의 글, 二장(二)〈欽定憲法大綱〉은 2천 여 년 계속된 왕권신수적 군주전제 정체의 부정으로, 이로써 황권은 헌법·법률의 구속을 받아 더 이상 지고무상이 아니게 됨); 蔣華志, 앞의 글(〈欽定憲法大綱은 중국에서 입헌군주제를 건립한 법률문서로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헌법요강〉) 등 참조. 그밖에 <欽定憲法大綱〉의 성격에 관해서는 신우철, 앞의 글(각주 31), 406면 각주 24의 인용부분과 앞 각주 43의 서술·인용부분 및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116~124면; 王德志, 앞의 책, 157~164면 참조.

49) 이 도표는 별도로 인용한 부분 이외에 羅華慶, 앞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 등의 서술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50)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一장(一) 및 羅華慶, 앞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一장.

51)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一장(二) 및 羅華慶, 앞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二장(一).

52)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一장(三) 및 羅華慶, 앞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二장(二).

53)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一장(四) 및 羅華慶, 앞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三장.

〈도표〉 〈大日本帝國憲法〉과 〈欽定憲法大綱〉의 비교⁴⁹⁾

	大日本帝國憲法(1889. 2. 11)	欽定憲法大綱(1908. 8. 27)
모방의 원인	① 洋務運動·戊戌變法·新政 등 일본 메이지유신 모방 조류의 역사적 연장(러일전쟁 계기) ⁵⁰⁾ ② 부득불 헌정을 실시하면서도 가급적 ‘君權’을 손상하지 않으려 한 모방자의 정치적 의도 ⁵¹⁾ ③ 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우선 ‘정치침투’를 추진한 피모방자 일본의 적극적 지지·협조 ⁵²⁾ ④ 일본유학·과견, 일서 번역, 일인 敎習(관립학교 교사) 초빙 등을 통해 일본 헌정사상 유입 ⁵³⁾ ⑤ ‘同州同種同文之國(沈家本)’이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동류성에 대한 감응 ⁵⁴⁾ ⑥ 駐外使節과 出洋考政大臣, 중하급관리(일본유학생 출신), 지방 督撫와 조정대신들의 주장 ⁵⁵⁾	
입헌개혁의 절차 ⁵⁶⁾	① 메이지정부 중신들의 두 차례에 걸친 구미 입헌정치 사찰(1871. 11, 1882. 3), 구미사찰 중신들의 적극적 역할 발휘 ② 政體取調局의 설치, 制度取調局으로 변경 ③ 두 차례의 대규모 관제개혁(1874년, 1885년)과 정식헌법 공포(1889년) ④ 국회지위 경시(내각>헌법>국회) : 내각(1885) → 헌법(1889) → 국회(1890)	① 청조 중신들의 두 차례에 걸친 구미·일본 입헌정치 사찰(1905. 12, 1907. 9), 구미사찰 중신들의 적극적 역할 발휘 ② 考察政治館의 설치, 憲政編查館으로 변경 ③ 두 차례의 대규모 관제개혁(1906년, 1911년)과 <憲法大綱> 공포(1908) ④ 국회지위 경시(헌법>국회) : 憲法大綱(1908) → 資政院(1910)
입헌개혁의 기간 ⁵⁷⁾	메이지유신 이후 20년의 과도기 소요, 국회개설 직후는 정식국회 소집까지 9년의 기간을 예정	원래는 9년의 기간(‘豫備立憲’)을 예정, 1910년 11월, 다시 5년으로 단축(1913년 헌정실시 예정)
입헌개혁의 추진역량 ⁵⁸⁾	① 개혁적 구 귀족과 개혁적 ‘한시(藩士)’(신봉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대표) : 권능합일(‘한사’ 개혁파는 헌정능력과 실현권력을 모두 갖추) ② 초기 자본주의 발전 및 토지개혁·지조개혁·재정개혁 등으로 헌정의 경제적 기초 생성 ③ 여론개방·공론결집을 통해 헌정의식 제고	① 통치집단 상층부의 비자발적 입헌부르주아입헌파에 대한 압박·배제 : 권능분리(부르주아입헌파는 헌정능력은 있으나 실현권력이 없음) ② 메이지유신과 비교할 때 헌정의 경제적 기초가 현저히 결여됨 ③ 여론억압·공론방해로 인해 헌정의식 불비

- 54)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一장(六) 및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三장.
- 55)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一장(五) 및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 四장.
- 56)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二장(一·二).
- 57) 天林, 앞의 글, 三장(一)(‘1881년 메이지정부는 1890년 국회개설 예정 착유를 발표[9년의 기간을 예정], 1908년 청조는 9년 계획의 <逐年籌備事宜清單>을 발표’); 張從容, 앞의 글, 二장(載澤은 외세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5년 또는 9년[일본의 예를 참조]의 단기 입헌개혁을 주장, 端方은 입헌 전제조건을 구비를 감안한 15년~20년의 중장기 입헌개혁을 주장’); 宋四輩, 앞의 글, 四장(三)(‘메이지유신 이후 20년 기간과 豫備立憲의 9년 기간[이후 5년으로 단축]의 차이’); 李曉東, 앞의 책, 95면·106면(‘楊度的 3년 주장, 梁啓超의 [일본 20년 기준] 10년~15년 주장<立憲法議[1900]>’) 등 참조. <欽定憲法大綱>과 함께 공포된 9년간의 입헌계획, 즉 <逐年籌備事宜清單>은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61~67면에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이 기간을 단축·조정한 새로운 계획은 <縮改於宣統五年開設議院論(1910. 10. 3[음])><派博倫載澤爲纂擬憲法大臣諭(1910. 10. 4[음])>,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78~79면 및 <憲政編查館大臣奕劻等擬呈修正憲政逐年籌備事宜摺(附清單)(1910. 12. 17[음])><憲政編查館所擬修正憲政逐年籌備事宜依議論(1910. 12. 17[음])>,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88~92면 참조.

<p>헌법규정의 내용⁵⁹⁾</p>	<p>① 天皇 §1(텐노), §5-§6(입법), §7(의회소집 등), §10(관제/인사), §11-§12(군사권), §13(의교권), §14(계약), §15-§16(영전/사면), §57(사법), §9(행정입법), §8(緊急勅令), §66(황실경비), §74(皇室典範) ② 臣民權利義務(총 15개조) §19(공무담임권), §29(언론/저작인행[印行]/집회/결사의 자유), §23(신체의 자유), §24(재판청구권), §25/§27(소유권과 주소의 불가침), §20-21(납세/병역 의무), §62(조세법률주의) ③ 緊急勅令(§8)에 의회의 사후 승인권 규정 ④ 청원권(§30) 규정</p>	<p>① 君上大權 §1-§2(왕제), §3(입법), §4(의회소집 등), §5(관제/인사), §6(군사권), §7(의교권), §8(계약), §9(영전/사면), §10(사면), §11(행정입법), §12(緊急詔令), §13(황실경비), §14(皇室大典) ② 臣民權利義務(총 9개조) §1(공무담임권), §2(언론/저작출판/집회/결사의 자유), §3(신체의 자유), §4-§5(재판청구권), §6(재산/거주의 불가침), §7(납세/병역 의무), §8(조세법률주의), §9(국법준수 의무) ③ 緊急詔令(§12)에 의회의 사후 협의권만 규정 ④ 청원권 삭제, 긴급 시 황제는 ‘詔令’으로 臣民의 자유 제한 가능(君上大權 §8)</p>
<p>헌정성공과 헌정실패의 요인⁶⁰⁾</p>	<p>① 단일민족 국가(텐노 군주정체 장기 존속) → ‘왕정복고’ 형식을 통해 입헌주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입헌주의와 군주제의 상공적 결합) ② 제야 입헌 반대세력의 무기력·어용성 ③ 입헌개혁 세력의 이해관계 일치, 단결(개혁적 구 귀족과 사츠오·한바츠[藩閥]의 결합) ④ 御藩과 版籍奉還·廢藩置縣 등 일련의 집권-통일 과정이 중앙-지방의 ‘합작식’으로 진행 ⑤ 봉건적 유교문화의 속박이 심하지 않아 자본주의 입헌체제로의 전향이 용이(‘蘭學’과 ‘町人’)</p>	<p>① 다민족 국가(양조교제/역성혁명 반발) → 다수한족과 소수만주족의 대립으로 입헌주의 개혁 실패(입헌주의에 대한 만주족 군주의 의심) ② 제조 입헌 반대세력의 현실적 영향력 ③ 입헌개혁 세력의 이해관계 대립, 분열(명서계, 서대후, 載灃, 奕劻, 袁世凱, 端方, 載澤 등) ④ 지방 漢人督撫의 軍餉(財權)司法權 회수 과정이 중앙-지방의 ‘대항식’으로 진행 ⑤ 봉건적 유교문화의 속박이 심하여 그 역사적 타성이 장애로 작용(‘經學’과 ‘紳商’관계개혁 시 都察院 존속)</p>
<p>의회의 구성과 권한⁶¹⁾</p>	<p>① 貴族院(5종 의원)과 衆議院(납세액/연령/성별/주거 등을 기준으로 한 제한선거를 거쳐 의원 구성) ② 衆議院 의장·부의장 인선은 ‘의원선거’ 요소 포함(선출된 후보자 3명 중 텐노가 취임) ③ 貴族院은 皇族, 公侯爵, 伯子男爵 중 선거, 국가에 공로가 있거나 학식이 있는 자 중 취임, 다액납제자 중 호선/직임 등 방식으로 구성됨 ④ 의회의 입법권은 헌법개정을 포함, 일체의 법률안에 미친(‘협찬’)</p>	<p>① 資政院 欽選議員(7종 의원)과 民選議員(사실상 관선[각 省 咨議局 의원 중 호선 후, 당해 省 督撫가 선정][院章 §11]) ② 資政院 總裁·副總裁 인선은 완전한 ‘황제 임명’ 방식(‘特旨簡充’)[院章 §2-§3] ③ 資政院 欽選議員에는 추가로 ‘外藩王公世爵’(소수민족 상류층 포섭 의도)과 ‘各 部院衙門 47품 관원’(‘官憲’의 가중 의도)이 포함(院章 §9) ④ 資政院 의결사항은 제한적으로 열거됨(헌법개정 배제)[院章 §14]</p>
<p>내각의 구성과 권한⁶²⁾</p>	<p>① 총리대신 1인의 국정 장악(의회무책임) ② 衆議院에 대항한 ‘관료의 방위군’ 樞密院 ③ 평민 출신 이토오 히로부미의 초연내각</p>	<p>① 總理 1인 외에 協理 2인 추가(상호견제) ② 의회정치 방지 및 내각제약을 위한 弼德院 ③ 慶親王 奕劻의 황족내각(만주귀족 9/13)</p>
<p>사법제도의 개혁⁶³⁾</p>	<p>① 司法部와 大審院 설치, ‘4급3심’의 지방법원 편제(각 府 藩의 사법권 회수·집중) ② 서양 법률가의 자문으로 근대법전 편찬</p>	<p>① 法部와 大理院 설치, ‘4급3심’의 지방법원 편제(각 省 漢人督撫의 사법권 회수·집중) ② 일본 법률가의 자문으로 근대법전 편찬</p>

58) 羅華慶, 앞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三장(三) 및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 一장(-).

VI. ‘脫日入美’ : 입헌에서 혁명으로

“배가 크면 뱃머리를 돌리기 어렵다(船大掉頭難)”는 말 그대로, 일본의 메이지유신·메이지헌법 모델로써 老大國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했다.⁶⁴⁾ 정부의 부패·무능과 반복되는 패전, 재정악화·증세와 이로 인한 농민 봉기의 빈발 등, ‘텐노에의 충성’을 매개로 중앙정부의 권위를 확립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정치적 통합의 위기는 ‘만주족 황제’에 대한 다분히 현실 주의적인 복종으로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⁶⁵⁾ 그밖에 일본의 성공과 중국의 실패를 판가름한 결정적 차이는 중앙-지방의 관계문제

- 59)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二장(三)(1), 三장(一) 및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 一장(二)(1). 메이지헌법과 欽定憲法大綱의 조문대조(‘君上大權’ 부분)는 殷嘯虎, 앞의 책, 92~93면 참조. 특히, 羅華慶, 앞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二장(二): “憲法欽定, 大權中心, 皇室自治, 兵政分離”의 메이지헌법 ‘四大主義’를 따름.”
- 60)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四장 및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 二장.
- 61)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二장(三)(3), 三장(二) 및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 一장(二)(2). <資政院章程(1909. 8. 23)>의 총 10장·67개조 전문은 『大清法律法規大全(憲政部 第1冊)』, 卷1, 2-5에 수록되어 있다.
- 62)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二장(三)(3), 三장(二) 및 羅華慶, 같은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 一장(二)(3). 당시, 軍國機務處의 폐지를 전제로 한 책임내각의 조직은 황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이는 조정대신들의 지위(특히 만주귀족의 특권)에 직결된 권력재분배의 문제이기도 했으므로, 관계 개혁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의 실시는 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다(張普藩, 앞의 책[각주 10], 89면, 124면; 張從容, 앞의 글, 二장; 天林, 앞의 글, 二장[-]; 笑蝶, 앞의 글, 一장[2.]; 陳小平, 앞의 글, 一장[-] 등 참조).
- 63)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二장(三)(2). 일본과 중국에서 3권분립·사법독립의 원리를 동원한 지방 사법권의 회수·집중에 관해서는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일본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헌법적 수용」, 『중앙법학』 8-3(2006), 16면(각주 42), 18~20면(각주 50, 52, 55의 인용부분), 25~26면 및 신우철, 앞의 글(각주 31), 406~407면(각주 27, 28의 인용부분), 420면 참조.
- 64) 羅華慶, 위의 글(각주 47), 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 四장.
- 65) 蕭武, 앞의 글, 四장. 관련하여 欽定憲法大綱의 君上大權 제1조와 관련하여 “중국에는 자고로 ‘만세일계’의 역사가 없었다”는 혁명파의 비판 참조(張普藩, 앞의 책[각주 10], 120면; 王德志, 앞의 책, 162면).

및 이와 결합된 한족-만주족의 민족문제(漢人督撫와 淸朝廷의 대립·충돌)였다 할 것이다. 관제정비를 필두로 청 정부가 추진한 입헌주의 개혁의 본질은 수평적 권력분립을 매개로 수직적 권력집중을 달성하려는 것(“中央集權之勢成, 而政策統一之效著”)⁶⁶⁾, 아편전쟁과 太平天國 운동 이래 사실상 왕처럼 군림했던 各省 漢人督撫들로부터 君權·財權 및 司法權을 회수하려는 것(“憲法之行, 利於國, 利於民, 而最不利於官”)⁶⁷⁾에 다름 아니었다.⁶⁸⁾

66) <慶親王奕劻等奏釐定中央各衙門官制繕單進呈摺(1906. 9. 16[음])>,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464면.

67) <出使各國考察政治大臣載澤奏請宣布立憲密摺(1906)>,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 173면.

68) 청말의 입헌운동을 분석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 점(중양-지방의 관계문제와 한족-만주족의 민족문제)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61면(“張之洞의 반 변법, 반 민권”), 63면·67면(“保中國不保大清의 문제”), 84~85면(“입헌을 빙자하여 한족의 세력을 꺾으려는 음모[혁명파의 비판]”), 89면(“관제개혁·권력[중양]집중으로 만주귀족의 특권 유지, 황족집권을 실현”), 90~91면(“지방관제 개혁으로 漢人督撫의 권력 삭감”), 115면(“서양열강은 지방의 반항을 억압하도록 청 정부에 중용”), 121면(“欽定憲法大綱의 남세의무는 대외 배상책임을 지拂하기 위한 중세의 목적...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하느니 차라리 漢人은 자살의 의무를 진다고 하라”), 126면(“황족내각 조직과 만주족/한족 관료의 대립”), 127~128면(“排滿 민족혁명의 형세 고양”), 王德志, 앞의 책, 106면(“지방체제 개혁으로 사법권 회수”), 144면(“혁명파의 滿漢 정치적 불평등 비판”), 181면(“종족혁명 없이 입헌 없다”), 185~190면(“혁명파의 만주정부 입헌 비판”), 203~204면(“민족문제를 고려한 군주입헌론[楊度]”), 244~245면(“咨議局을 통한 督撫 권력제약”), 251~254면(“재정권·인사권을 둘러싸고 咨議局과 督撫 충돌”); 張從容, 앞의 글, 一장(“입헌을 빌미로 지방세력이 침탈했던 중앙권력을 회수”); 笑蝶, 앞의 글, 一장(2.X“내각 구성의 滿漢 균형 후퇴”), 一장(3.A.X“입헌은 漢人養虎의 환근이며 한족에 유리하고 만주족에는 불리하다는 비판 및 이에 대한 載澤의 반론”), 三장(1.X“중양집권적 일본 입헌모델로써 太平天國 운동 이래 지방 漢人督撫가 보유한 군권을 회수...지방 督撫들은 제국주의 열강과 결탁, 지방 士紳과 이익공동체 결성, 국회청원운동을 묵인·지지”); 天林, 앞의 글, 一장(三)“載澤의 滿漢不分, 입헌주장”), 二장(一)“입헌실시·관제개혁 목적은 지방 督撫의 권력약화 및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강화”), 二장(二)“지방 咨議局的 지방관 전제권력 약화·제한”; 陳小平, 앞의 글, 一장(一)“載澤의 滿漢不分, 입헌주장”), 二장(二)“입헌파와 혁명파의 차이는 만주족 국가원수에 대한 태도...혁명파의 주류는 민족혁명을 신봉, 헌정혁명을 배척...입헌 성공이 만주족 정부에 유리할 것을 우려”; 蕭武, 앞의 글, 三장(“서태후 사망으로 지방 督撫의 정부지지 상실”), 四장(“湘軍→淮軍→新軍으로 이어지는 한족관료의 지방 군권 장악...사실상의 제후로서 지방 士紳과 이익공동체 결성, 민의를 구실로 중앙의 詔令 거부...서태후·광서제 사망 후 조정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 상실”); 金亮賢·吳起偉, 앞의 글, 二장(一.1)“新政 이래 지방 漢人督撫의 군사권·재정권이 점차 만주족 황실 수중에 집중”; 李曉東, 앞의 책, 83면(“군주가 곧 국가는 아니며, 종족이 곧 국가는 아니다[楊度]”), 89면(“咨議局的 폐해, 즉 지방의 단결로 국가의 분열을 결과[楊度]”), 90~91면(“서양열강에 의한 분할을 면하기 위해 청조 황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蒙·回·藏 등 민족의 이탈을 방지[楊度]”);

중앙-지방 관계와 한족-만주족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중국의 국가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일본식 모델이든 영국식 모델이든 그 어느 것도 입헌군주제 방식으로는 용량부족임이 판명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식 공화제 모델, 즉 ‘입헌주의 정치개혁’에서 ‘공화주의 민족혁명’으로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다(“驅除韃虜，恢復中華，創立合衆政府”).⁶⁹⁾ ‘텐노=국체와 종교=신도오(神道)의 결합’을 의미하는 메이지헌법의 제정일치 체제가 근대화 초기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근대국가의 건설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국민통합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太平天國 운동이나 義和團 운동의 종교적(‘上帝’) 또는 반종교적 성격(‘教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당시 중국의 정신적 분열상이야말로, 근대국가 및 근대 입헌정체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입헌군주제라는 부동의 대 전제 하에서 의회소집·사법독립·자유민권보장 등 구체적 정치시스템이 문제시되었던 일본 입헌주의의 상황과 비교할 때, 중국에서는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나’, ‘만주족이나 한족이나’ 하는 국가형태 자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관건적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⁷⁰⁾

殷嘯虎, 앞의 책, 39~40면(‘漢人 공화국 수립하면 만주족 반항, 蒙·回·藏 등 이탈[楊度]’) 등 참조 상세한 분석은 劉偉, 『晚清新政時期中央與各省關係初探』, 『華中師範大學學報: 人文社科版』(2003. 6),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劉頌, 『地方督撫與清末預備立憲』, 『河北學刊』(1996. 5),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2007. 2. 20]) 참조. 그밖에 신우철, 앞의 글(각주 31), 406~407면 각주 26, 27, 28의 인용부분도 참조

- 69) 신해혁명으로의 급속한 상황전개 과정에서 청 정부는 혁명세력의 <政綱十二條>를 그대로 수용한 <重大信條十九條(十九信條)(1911. 11. 3)>를 다급하게 내어놓는다. 이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충실히 수용한 헌법문서로서, 欽定憲法大綱과 달리 규범적 효력을 지닌 정식 헌법이었으나, 중화민국의 수립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상실하고 법제사의 한 장 속에 묻혔다. 관련하여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27면 이하(특히 130~132면); 殷嘯虎, 앞의 책, 96~101면; 天林, 앞의 글, 三장(二); 宋四輩, 앞의 글, 三장(六); 金亮賢·吳起偉, 앞의 글, 一장; 신우철, 앞의 글(각주 31), 408면의 서술 및 동 각주 37, 38, 39의 인용부분 참조
- 70) 신해혁명 직후 <臨時約法(1912)> 체제의 공화제 시스템이 袁世凱 독재(<袁記約法[1914]>)를 거쳐 ‘帝制’로 전환되었던 여처구니없는 사실이야말로, 당시 주요모순이 ‘滿漢’ 사이의 민족갈등에 있었음을 선명하게 입증한다(‘만주족 황제에서 한족 황제로’).

VII. 끝맺을 수 없는 맺음말

청말 입헌주의 제 개혁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한 문장-‘패장은 말이 없다’고 하지만-을 부기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新政·豫備立憲 시기의 원시입헌주의(<欽定憲法大綱>) 체제, 특히 그 원시의회주의(<資政院><咨議局>) 체제는, 종래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입헌에서 혁명으로의 전환’에 합법적·제도적 활동 공간, 즉 일종의 ‘공공영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⁷¹⁾ 그러나 신해혁명 이후民国 시기 내내-항일전쟁이라는 위기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입헌주의 요청의 이행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기되었다(‘訓政’의 상시화). 권력의 교체(=혁명) 이후에도 권력의 제한(=입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헌주의의 진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까마득히 망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중국식 입헌주의의 도구적 성격(부국강병의 수단으로서 헌법), 둘째로는 입헌파와 혁명파의 권력투쟁에서 전자의 패배·소멸(혁명으로써 입헌을 대체)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중국 대륙의 자유주의 운동가들 사이에서 ‘헌정’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청말 입헌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활발히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실로 주목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중국은 ‘권력분립·권력통제와 기본권보장’이라는 18·19세기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과제를 21세기에 이르러 다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러한 과제를 부국강병이라는 또 다른 ‘중국 이데올로기’와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71) 王德志, 앞의 책, 240면 이하(특히 246면[‘입헌과 인사의 咨議局 참여’], 256면 이하(특히 264면[‘資政院 민선의원 의 우세’]; 張晉藩, 앞의 책(각주 10), 103면 이하(특히 106~107면[‘咨議局 제한선거에 대한 무관심…咨議局 통해 입헌파 유학생, 지식인계층 세력 확장’]), 110면 이하(특히 114~115면[‘입헌파는 資政院이라는 합법공간을 이용, 정부의 부패·무능을 공격하고 입헌주의를 선전…資政院·咨議局 활동을 통해 전제에 대한 환상을 타파하고 결국 혁명에 동조하기에 이룸’]; 殷嘯虎, 앞의 책, 75면 이하(특히 80면[‘保路運動을 계기로 咨議局을 합법적 도구로 이용’], 82면[‘資政院·咨議局의 설립은 淸朝廷-立憲派 연합의 산물이었지만, 동시에 양자 모순·분열의 계기가 됨’]; 金亮賢·吳起偉, 앞의 글, 2장(-2X‘豫備立憲은 분산적·각개적 성향의 新紳士들에게 전국무대로 오를 수 있는 기회[資政院·咨議局]를 제공’) 등 참조.

〈참고문헌〉

-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下)』,北京:中華書局,1979.
- 『大清法律法規大全(憲政部 第1冊)』
- 范中信(編),『梁啟超法學文集』,北京:中國政法大學出版社,2000.
- 梁啟超,『梁啟超全集』,北京:北京出版社,1999.
- 王德志,『憲法概念在中國的起源』,濟南:山東人民出版社,2005.
- 王人博,『憲政的中國之道』,濟南:山東人民出版社,2003/2004.
- 殷廬虎,『近代中國憲政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7.
- 李曉東,『近代中國的立憲構想:嚴復·楊度·梁啟超と明治啓蒙思想』,東京:法政大學出版局,2005.
- 張晉藩,『中國近代社會與法制文明』,北京:中國政法大學出版社,2003.
- _____,『中國憲法史』,長春:吉林人民出版社,2004.
- 정관영 지음, 이회승 옮김, 『성세위언: 난세를 향한 고언』, 책세상, 2003.
- 鍾叔河,『走向世界』,北京:中華書局,1993.
- 中國史學會(編),『戊戌變法(第2冊)』,上海:神州國光社,1954.
- 金亮賢·吳起偉,「晚清豫備立憲述評」,『麗水師範專科學校學報』26-4, 2004.
- 羅華慶,「清末‘預備立憲’對日本明治憲政模仿中的保留」,『河北學刊』,1992. 6.
- _____,「清末預備立憲與日本明治憲政」,『近代史研究』,1991. 5.
- _____,「清末‘預備立憲’爲何模仿日本明治憲政」,『北方論叢』,1991. 3.
- lisaleec(李劍虹),「1949年以前的中國近代憲政史回顧與反思」,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 謝俊美,「清末新政失敗論議」,『歷史教學』,1995. 11.
- 蕭功秦,「清末新政時期的立憲論爭及其現代啓示」,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 _____,「清末新政中的保守主義思潮」,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 蕭 武,「反抗革命:晚清憲政改革再認識」,『書屋』,2003. 2.
- 蕭 瀚,「百年憲政的歷史省思」,中國新聞網(<http://www.chinanews.com.cn/2001-09-05/26/119523.html>).

- 笑 蠟(가명), 「憲政의起點: <欽定憲法大綱>」, 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 宋四輩, 「清末‘豫備立憲’芻議」, 『鄭州大學學報』, 2005. 5.
- 劉軍寧, 「清末商民的憲政情懷」, 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 劉 碩, 「地方督撫與清末預備立憲」, 『河北學刊』, 1996. 5.
- 劉 偉, 「晚清新政時期中央與各省關係初探」, 『華中師範大學學報: 人文社科版』, 2003. 6.
- 「立憲紀聞·中國立憲之起原」, 『東方雜誌·臨時增刊: 憲政初綱』, 1906. 12(음).
- 張連起, 「論清末國策轉移的背景和目的」, 『北方論叢』, 1994. 2.
- _____, 「‘戊戌變法’與‘清末新政’異同辨析」, 『北方論叢』, 1986. 2.
- 張從容, 「回到歷史的起點: 析<欽定憲法大綱>的出台原因」(미간행 논문).
- 蔣華志, 「清末新政新論」, 『樂山師專學報: 社科版』, 1990. 2.
- 鄭大發, 「論清末統治集團內部的立憲派」, 『江漢論壇』, 1987. 9.
- _____, 「重評<欽定憲法大綱>」,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1987. 6.
- 鄭大華, 「關於清末預備立憲幾個問題的商榷」, 『史學月刊』, 1988. 1.
- 程爲坤, 「日俄戰爭與清末立憲運動」, 中國人民大學清史研究所, 『清史研究集(第七輯)』,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90.
- 遲雲飛, 「預備立憲與清末政潮」, 『北方論叢』, 1985. 5.
- _____, 「重新審視晚清立憲派」,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
- _____, 「清季主張立憲的官員對憲政的體認」, 『清史研究』, 2000. 1.
- 陳小平, 「近現代中國憲政運動發軔的國內環境」, 憲政文本(<http://www.libertas2004.net>).
- 天 林, 「清末‘豫備立憲’在中國歷史上的地位」, 公法評論(<http://www.gongfa.com/qingmoyubei>
lixian.htm).

The Early Chinese Constitutionalism : The Constitutional Movement in the Late Qing Dynasty

Shin, Woo-Cheol*

The Constitutional Movement (“Li-xian Yun-dong”) in the late Qing Dynasty followed the Japanese reformist line from the “Meiji Restoration(1868)” till the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1889).” In the article I traced the 4-step development of the early Chinese Constitutionalism: birth of ur-constitutionalism, politicalization of constitution-making movement (“Bian-fa Yun-dong”), institutionalization of preparation for constitutionalism (“Yu-bei Li-xian”), and 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plan (“Qin-ding Xian-fa Da-gang”). Here, I examined the constitutional thoughts of such scholars as Wei Yuan(魏源), Liang Tingnan(梁廷柵), Xu Jiyu(徐繼畬), Feng Guifen(馮桂芬), Zheng Guanying(鄭觀應), Wang Tao(王韜), Chen Chi(陳熾), Kang Youwei(康有爲), Liang Qichao(梁啟超), Yan Fu(嚴復) and Yang Du(楊度). I also analyzed the “Qin-ding Xian-fa Da-gang(欽定憲法大綱)(1908)” article by article, and made a comparison between Chinese constitutionalism and Japanese one. As a result, I drew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ypes: the Manchurian Emperor could not integrate the whole nation as efficient as the Japanese Emperor “Tenno” did, and the road of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as therefore not available in China.

[Key Words] China, Qing Dynasty, constitution, constitutionalism, Japan, constitutional movement, constitutional history, Kang Youwei, Liang Qichao, Yan Fu, Yang Du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